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4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사분야 특정감사 －

2024. 9.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통보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1건	0	0	1	0	0	0	0	0	0
1	□ □ 과	★★공사 추진 부적정	-	-	1	-	-	-	-	-	-

2. 처분요구일람표

1. ★★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상북도 □□과에서는 ※※군 ○○면 ㉠㉠리 ~ ◆◆군 ◆◆면 ◇◇리 일원에 “★★공사”를 아래[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용역)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용역명)	위 치	사 업 량	공사(용역)금액			사업기간	도급자 (건설사업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공사	※※○○ ~◆◆◆◆	도로=*,*km, B=*,*m 터널 *개소	**,***	**,***	*,***	****,**,**, ~ ****,**,**,	◁<건설(주) ◀<건설(주)	
★★공사건설사업 관리용역	※※○○ ~◆◆◆◆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	*,***	-	****,**,**, ~ ****,**,**,	(주)●●엔지니어링 (주)□□엔지니어 링건축사무소	

1. 행정업무규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 이행 부적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하고,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로 구분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¹⁾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

1)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²⁾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7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2조에 따르면 “지시”란 발주청이 공사감독자에게,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에게 또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92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 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에서는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정보고 서류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구두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표2]와 같이 시공사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실정보고 6건을 보고 하였는데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통상적인 방법³⁾으로 문서를 접수하지

2) 별표 2에 따른 접수인을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접수인을 찍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문서의 오른 쪽 위 여백에 찍어야 함

3) 서류 접수전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시공사와 감리단, 발주청의 의견이 일치될 때 서류 접수

않고 발주청에 구두협의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발주청 또한 문서를 접수하지 않고 구두협의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완지시한 내용을 문서로 기록·비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실정보고 처리현황

- 생 략 -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사유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도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문서인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일반과업지시서」 제4항(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나목(운영)에 따르면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계약내용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사망·질병·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준공시 까지 필히 근무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용역업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가 없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질병, 퇴직으로

인한 교체 시에는 아래 [표 3]의 사항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다.

[표 3] 질병, 퇴직으로 인한 교체조건

구 분	교 체 조 건
질 병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의사소견이 명시된 3개월 이내의 입원 등 가료가 필요한 경우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용 고려하여 동등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교체. (대직근무)후 완치 시 원대복귀 근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의사소견이 명시된 3개월 이상의 입원 등 가료가 필요한 경우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용 고려하여 동등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교체
퇴 직	고용계약서에 의거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기간 내에는 교체 불가
	계열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취업 시 교체 불가

※ □□과 제출자료 참고 작성

따라서 □□과에서는 이미 배치되어 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건설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사망·질병·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준공시 까지 필히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가 없도록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본 공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아래 [표 4] 1번 사항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대책마련 및 부진공정 만회 등 원활한 사업관리”가 되지 않는 발주청의 교체요구사유가 있었음에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서 교체

사유가 아닌 교체기준으로 보고한 건을 접수하여 교체승인하였으며,

아래 [표 4] 2번 사항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 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함에도 임시투입하는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현황

- 생 략 -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